

충주시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5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4. 7. .

제출자 : 충주시장

1. 제안이유

사용료의 반환규정을 구체적으로 신설

2. 주요내용

- 가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시의 행사 또는 수련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→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(안 제17조 1호, 2호)
- 나.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→ 납부한 금액 일부 반환(안 제17조 3호 ~ 5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따로 붙임
- 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: 따로 붙임
- 다. 입법예고(2014. 4. 18. ~ 5. 12)결과 : 접수된 의견 없음
- 라. 규제심사·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 : 완료

충주시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주시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부터
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
다고 인정되는 경우: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
2. 시의 행사 또는 수련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
경우: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
3.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15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:
납부한 금액의 10%를 공제한 금액
4.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7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:
납부한 금액의 50%를 공제한 금액
5.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: 납부
한 금액의 80%를 공제한 금액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사용료의 반환)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</p> <p><u>1. 수련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.</u></p> <p><u>2.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반환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7조(사용료의 반환)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: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</u></p> <p><u>2. 시의 행사 또는 수련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: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</u></p> <p><u>3.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15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: 납부한 금액의 10%를 공제한 금액</u></p> <p><u>4.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7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: 납부한 금액의 50%를 공제한 금액</u></p> <p><u>5.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: 납부한 금액의 80%를 공제한 금액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
<p><u><신 설></u></p>	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

제144조(공공시설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수반 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규정

-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될 때

3. 미첨부 사유

- 해당 없음

4. 작성자

- 문화복지국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